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1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5 ~ 38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38
----------	-----------

제출연월일	2015. 6. 1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나. 세입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 세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500백만원 추경 시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5. 07. ~ ‘15. 5. 28.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불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3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0	0	0	0	0	0
세출	도 비					
	국 비	500	30	30	30	30
	소계(a)	500	30	30	30	30
세입	국 비	500	30	30	30	30
	소계(b)	500	30	30	30	30

3. 관련 의견

- 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세입이 변경될 수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신청으로 세출예산이 결정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감악산 입구 진입로 개설 : 400백만원 정도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100백만원 정도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30백만원

작성자 : 창조산업과장 이 상 준